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25호 2010. 3. 11. (목)

공 고

- 공고 제2010-182호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결혼이민자기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1
- 공고 제2010-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일립미당 → 북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결혼이민자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 대상 : 아래 사업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결혼이민자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별첨1 참조】

2. 지정 주체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3. 지정 기간 : 2010. 4. 1 ~ 2011. 1. 31(10개월)

4. 총 사업비 : 96,000천원

5. 신청자격

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나. 관계법령에 의해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

다.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라.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과 같이

선정된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미 제공 중인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0. 3. 18(목) ~ 3. 22(월) / 3일간

나.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1) 10부.
-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서식 2 및 서식3) 10부.
- 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 4) 10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최근 3년분)
- 기타 사업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라. 제출처 : 북구청 사회복지과

7. 지정방법

○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 제안서 참조 제공기관 지정

※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의 경우 절차등 간소화 가능

8. 유의사항

가.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나.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 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9. 선정결과 공지

- 공문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219-734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바우처 지원사업

I. 제안개요

- 사업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II. 제안기관 일반

- 제안 기관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사업현황, 재무 현황,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

III. 세부 사업계획

- 서비스 공급 지역 범위, 서비스 공급 방안, 서비스 공급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 계획,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 계획,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서비스 성과 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IV. 기타

- 사업 특화 방안,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서식 3】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기술
대응투자 규모	총 천원(현물 천원, 현금 천원, 기타 천원) ※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업계획 요약	
<p style="text-align: center;">*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관리방안 등 주요 사항 요약 서술</p>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2.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단가는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별첨1】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추진배경의 필요성

-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가 미비한 상태
- 다문화가정 아동 및 결혼이민자여성의 언어 자극을 위하여 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 기본생활습관, 예절분야의 교육을 종합적 지원필요

□ 사업목적

-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부적응 문제 예방을 위해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서비스 체계 마련
- 다문화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지원

□ 지원대상 및 인원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내에 거주하는 적법하게 체류·정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 외 가족)
- 북구 다문화가정 : 416가구

□ 바우처 지원액

- 시장가격 추산 : 월 200,000원
- 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180,000원
- 본인부담 : 20,000원(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최저 가격 기준 20%내외로 함을 원칙
- 건당 비용 및 이용자 부담금

(단위: 원,%)

사업구분	구분	이용 인원	총액	바우처 지원금	이용자 부담금	이용자 (부담비율)
사회통합 교육 (자녀교육 한글 요리 문화)	1회		25,000	22,500	2,500	10
	월간(8회)	20	200,000	180,000	20,000	10
사회통합 도우미파견사업 (자녀전문, 생활지원, 상담)	1회		25,000	22,500	2,500	10
	월간(8회)	28	200,000	180,000	20,000	10

□ 서비스 내용

○ 사회통합 교육(월8회)

- 한글교육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
- 내 용 : 한글교육(문법, 회화등)

- 한국요리 교육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
- 내 용 : 한국요리 교육(김치, 반찬류, 퓨전요리 등)

- 한국 문화 배우기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 내 용 : 한국의 역사, 문화, 예절등 교육, 문화체험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정 자녀
- 내 용 : 우리말배우기,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 사회통합 지원 도우미 파견(월8회)

- 자녀 전문 교육 서비스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의 자녀 중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학습 지원이 필요 한 만 2세~ 12세의 아동
- 내 용 : 언어발달 교육, 기초학습 지원등
- 파견인원 : 1명(1:1)

- 한국 생활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중 농·어촌 지역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임신(만삭) 및 거동 불편으로 인해 내방 교육이 어려운 자
 - 내 용 :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교육
 - 파견인원 : 1명
- 상담원 파견 사업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중 농·어촌 지역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임신(만삭) 및 거동 불편으로 인해 내방교육이 어려운 자, 가정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및 가족
 - 내 용 : 가족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부모교육, 멘토링 서비스등
 - 파견인원 : 1명(1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

□ 서비스 공급

- 공급인력 :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 필수 교육 과정 이수자
 - 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보육교사 등
 -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공급기관 :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파견 가능기관(업체)

□ 기대효과

- 결혼이민여성 가정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녀교육환경 개선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양극화 해소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사회 적응곤란 해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매곡(2)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2010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지역을 매곡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의 조문 및 별표 정비를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조문 개정
- “울산매곡(2)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m ²)		법정동	필지	면적(m ²)
계	83	40,583		계	83	40,583
매곡동	53	21,958		매곡동	53	21,958
신천동	30	18,625			30	18,625

- 조문의 개정연혁 삭제
- 별표정비 :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2”에서 “별표 7”까지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219-7233, FAX 219-723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총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